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8. 7. 9. 제 천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8. 7. 10.
다. 상 정 일 자 : 2008. 7. 16.(제14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부과팀장 이문영)

가. 제안사유

-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 5. 9. 시달됨에 따라
- 현행 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승차정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중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세의 100분의 66을 경감하고
-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33을 경감하도록 한 것을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96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석윤)

【 법적 검토 】

- 지방세법 제7조(공익상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안정안전부 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2008년 5월 9일(세정과-5218) 시달됨에 따라 제천시세 감면조례를 표준안에 맞게 일부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타당성이 있음.
- 본 조례안은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제42조 등에 의거 2008년 6월 5일 입법예고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의 19규정에 의거 제천시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거치는등 제반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음.

【 행정적 검토 】

- 본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5,000원을 적용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신규 등록차량은 다른 7~10인승과 균형을 위하여 표준 조례안을 적용하는 것임.

| | 현 표준안 | 개 정 안 | |
|------|--------------|-----------------------------|----------------------------|
| | | 기 등록 차량 (‘07. 12. 31 이전) | 신규 등록 차량 (‘08. 1. 1 이후) |
| ‘08년 | 자동차세의 66% 경감 | 65,000원 | 자동차세의 66% 경감 (현행과 동일) |
| ‘09년 | 자동차세의 33% 경감 | 65,000원 | 자동차세의 33% 경감 (현행과 동일) |

- 본 조례안은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완화 시 서민들에게 어느 정도 세부담이 완화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본 조례안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2008년도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시 위 조례안이 적용이 되었는지,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 자동차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답변 요지

“없 음”

5. 소수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